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제정 : 2007. 6. 18.

개정 : 2010. 11. 5.

개정 : 2011. 9. 6.

개정 : 2016. 4. 4.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회사의 고객사, 공급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불 및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016. 4. 4.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2016. 4. 4. 개정>

- ① 비윤리 행위 :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통상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명시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신고 보상 : 비윤리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 ③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 개인과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제 단체를 말한다.
- ④ 면책 : 위반 사실이나 비윤리행위 등을 자진 신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⑤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 3 조 (신고의무) <2016. 4. 4. 신설>

- ① 포스코A&C 임직원은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내부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강요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 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4 조 (신고 및 통보 방법) <2016. 4. 4. 개정>

- ① 비윤리행위를 목격한 자 또는 자신의 비윤리행위를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회사의 정도경영실로 신고하며, 신고수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Cyber 신고, 우편, 전화, e-Mail, Fax,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2010. 11. 5. 개정>
- ②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도 있다.
<2016. 4. 4. 개정>

- ③ 정도경영실은 신고자가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원할 경우 감사진행 단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4. 4. 신설>
1. 신고접수 여부, 이첩 여부, 기타 조사관련 통보 사항은 해당사항 발생 인지 후 지체없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종 조사결과 통보시 내부감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통보한다. 단, 단순회신, 내부종결 등 별도의 조사가 필요없는 건은 담당 감사자의 검토 후 통보할 수 있다. 단,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통보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조 (자진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행위) <2016. 4. 4. 개정>

- ①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포스코A&C와 거래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 소속의 임직원 및 포스코A&C 임직원으로 한다. <2010. 11. 5. 신설>
- ② 보상 및 자진신고시 면책이 되는 비윤리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6. 4. 4. 개정>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족 및 친인척 포함)
 2.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3.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공식행사 예외)
 4.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 수수 행위
 5.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
 6.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7. 회사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8. 기타 윤리규범 위반행위

제 6 조 (신고에 대한 조사)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감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2016. 4. 4. 신설>

제 7 조 (신고자/조사자 신분보호) <2016. 4. 4. 개정>

- ①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1.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정도경영실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도경영실 직원은 상기 2항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담당 부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비윤리행위 적발과 신고인의 신분보호가 배치될 경우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우선시 한다.
 5.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 임직원이 상기 1호에서 5호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정도경영실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도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8.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신고자 및 조사자의 신분보장 <2016. 4. 4. 신설>
1. 신고자, 조사자, 참고인 등은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조사, 협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내에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다.
 2. 내부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그 사실을 정도경영실에 증명하고,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도경영실은 상기 2호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상금 지급 및 면책·감경 조건) <2016. 4. 4. 개정>

- 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정도경영실장이 대신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최종 지급한다.
- ② 자진신고자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비윤리행위를 입증하거나 정도경영실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입증 불가시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감경의 정도는 제도의 악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별첨 2)"에서 결정한다. <2010. 11. 5. 신설>
- ③ 상기 제5조 2항에서 명시한 비윤리행위 조사효율을 위하여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가 정도경영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감경 조치 할 수 있다.
단, 감경여부와 정도는 "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6. 4. 4. 개정>
- ④ 보상금 지급기준 및 면책조건은 (별첨 1)과 같다. <2010. 11. 5. 개정>

제 9 조 (보상 및 면책·감경 심의) <2016. 4. 4. 개정>

- ① 내부감사 부서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보상 및 면책심의 위원회'에 보상 및 면책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16. 4. 4. 개정>
 1.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확정
 2. 면책 대상 신고건의 면책여부
- ② 보상 및 면책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도경영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내부감사부서 기업윤리 담당자가 간사가 되며, 내부감사 부서장 및 부서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16. 4. 4. 개정>
- ③ 보상 및 면책심의 회의는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 할 경우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010. 11. 5. 개정>

제 10 조 (보상금 지급 및 면책 제외) <2016. 4. 4. 개정>

- 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②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 ③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내부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④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⑥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⑦ 정도경영실 또는 인사 담당 관련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⑧ 기타 보상 및 면책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음의 면책 제외 조건에 해당되어 면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자진신고 시점에 내부감사부서에서 이미 해당 비윤리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2.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사손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
 3. 면책 또는 감경 받은 자(업체)가 3년 이내에 동일·유사 비윤리행위를 주도하여 적발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상금 환수 및 면책 취소) 보상금을 지급 후 또는 면책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 또는 면책을 취소 할 수 있다. <2010. 11. 5. 개정>

제 12 조 (보복행위 금지) <2016. 4. 4. 개정>

- ①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정도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정도경영실은 상기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한다.
- ③ 내부감사부서는 주기적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하여야 한다. <2016. 4. 4. 신설>

제 13 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2016. 4. 4. 신설>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또는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② 정도경영실은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거나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타)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 및 면책 심의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2010. 11. 5. 개정>

부 칙 : 이 지침은 2016년 4월 4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별첨 1) 신고보상 및 면책기준 <2016. 4. 4. 개정>

1. 적용대상

가. 신고보상 대상 : 외부 일반인(포스코A&C 및 그룹사 직원 제외) <2016. 4. 4. 개정>

나. 자진신고 면책대상 : 당사 임직원, 포스코A&C와 거래하는 모든 법인 및 법인소속 임직원 <2010. 11. 5. 신설>

2. 보상기준

가. 보상금액

- (1)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보상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016. 4. 4. 개정>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미만	미지급
1천만원 이상	보상대상가액의 3%(최대 1천만원)

- 보상대상가액 :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의 방지나 수익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 예상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2016. 4. 4. 신설>
 -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011.9.6. 개정>
- (2)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6. 4. 4. 신설>

3. 면책기준

- (1)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신고시 : 면책 < 2010. 11. 5 개정 >
- 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 제외
- (2) 제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 건에 대한 면책 및 감경 여부는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제9조 2항에 의거 반드시 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해야 함 <2010. 11. 5. 신설>

4. 보상금 지급사유 중복시 보상기준

보상금 및 인센티브 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점수)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2016. 4. 4. 개정>

(별첨 2) 신고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016. 4. 4. 개정>

1. 목적 :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면책(감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기술한다.
2. 구성 : 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6. 4. 4. 개정>
 - 가. 위원장 : 정도경영실장
 - 나. 위 원 : 내부감사 부서장 및 부서원
 - 다. 간 사 : 내부감사부서 기업윤리 담당자
 - 라. 배 석 : 비윤리행위 조사담당자
3. 기능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심의 및 의결한다.
 - 가.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 나. 비윤리행위 자진신고자(업체) 면책 및 감경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소집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윤리행위 신고사항을 조사 주관한 감사인이 필요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5. 의사결정
 -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나. 부의안건이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실무자를 참석시켜 의견의 청취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라. 간사는 회의 개최 1 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기록 유지 및 보관한다.